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발간물의 광고료 게재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에 적합하게 “서구소식”을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광고물게재 사용료가 과다하여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부과기준(별표)에 “서구민한가족신문”란을 별도 신설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서구소식”을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개정(안 제3조제2항)
- 별표(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부과기준)중 “일반발간물”과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구분함(안 별표)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구보의 명칭변경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를 정비하고, 신문형태로 발간되는 서구민한가족신문에 대한 광고물 게재 사용료를 일반발간물과 구분·신설하여 부과하자는 안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를 서구소식,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발간물, 수시 간행물,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물 등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보인 “서구소식”은 이미 명칭을 변경하여(2003년 1월부터)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 안은 현 실정을 반영하자는 안입니다.

안 별표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별표에서는 정기 발간물과 수시 발간물, 제본형태와 규격 및 발행부수에 따라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게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신문형태로 발간되는 서구민한가족신문에 대한 광고물 게재 사용료를 일반발간물과 구분·신설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과기준에 따른 경우 신문형태로 발간되는 서구민한가족신문에 게재된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는 2,749,000원(크기 : 타블로이드판 270mm x 390mm)이 부과 징수될 것이고, 이렇다보면 사용료가 과다하여 광고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타구와도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처럼 서구민한가족신문에 대한 광고물 게재 사용료를 일반발간물과 구분·신설하여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자치구별 광고물(구보)게재사용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서 구	동 구	남 구	북 구	광 산 구
광 고 료	2,749	1,458	1,296	1,500	1,050
크 기	타블로이드판 (270mm x 390mm)	타블로이드판 (270mm x 390mm)	타블로이드판 (270mm x 390mm)	타블로이드판 (270mm x 390mm)	타블로이드판 (270mm x 390mm)
발행부수	50,000	20,000	54,000	65,000	80,000

2002년도 자치구별 광고물(구보) 게재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구 보 명	광고물 게재 횟수, 단가	금 액
서 구	서구새소식지	연 8회, 1,214	9,712
동 구	빛고을1번지	전 무	0
남 구	남구새소식지	연 1회, 1,296	1,296
북 구	북소리	연 24회, 1,500	36,000
광 산 구	광산구보	연 11회, 1,050	11,550